

1. 개정이유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점자, 수어 등 정보 습득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

하지만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특수교사 양성체제 하에서는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원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근거 마련(안 별표 1 개정)

나.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기준 규정(안 별표 3)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시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소관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추가 이수한 경우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표시하되, 중등학교 과정의 경우 표시과목 다음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의 경우 표시과목 없이 표시한다.
3. 이료과목(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 과목은 재활복지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별표 3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전공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시 해당 장애유형 관련 과목 15학점(대학원 9학점) 이상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규칙 시행 전에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